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681

발의연월일: 2022. 7. 27.

발 의 자:서영교·김정호·신정훈

양기대 • 유정주 • 윤준병

이용빈 · 임오경 · 임호선

전혜숙 · 최인호 · 홍정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거일에 국내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경우에 관하여는 별 도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해외에 거소를 두고 있던 국외부재자선거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지 부근의 재외투표소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어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게되자 국내에서라도 투표를 하고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2020헌마895).

이에 재외선거사무의 중지결정이 있은 후 재개결정이 없는 경우로 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 선거인등이 귀국한 날부터 선거일 전 4일까지 신고한 경우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6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16제3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를 "제3항 및 제4항의"로 한다.

④ 제218조의29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재개결정이 없는 경우로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귀국한 날부터 선거일 전 4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외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 법) ①・② (생략) 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 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 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 -----말한다. 이하 제4항 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 에서 같다----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 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제218조의29제1항에 따른 <신 설>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이 있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외 선거사무 재개결정이 없는 경 우로서 재외투표를 하지 못하 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귀 국한 날부터 선거일 전 4일까 ④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 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u>지</u>	주소	기	또는	: <i>3</i>	종	주소	논지	를
관	할하는	=	구 •	시	• ਹ	- 선기]관	리
위-	원회이] /	신고	한	후	선기	1일	에
해'	당 선	거ㅋ	관리-	위원]회	가 >	기정	하
는	투표	소이	네서	투.	표할	수	있	<u>다.</u>
<u>0]</u>	경우	신	고를	부	}은	구 .	시	•
군/	선거관	<u></u>	위원	회-	느	중앙	<u> </u>	거
<u>관</u>	리위원	<u></u> 회	규칙	<u>o</u> :	로 🤇	정하	느	방
법.	으로	재 :	외투	丑	여기	부를	확	인
하(여야	한디	<u> </u>					
<u>⑤</u>	제3호	j}- 1	및 자	¶4₹	당의			